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1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1994년 1월 13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제21조의 규정에 따라
-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의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준 규정

5. 검토보고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검토한바

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

충청북도의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자 신설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

주요내용으로는

충청북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에 있어서

본청에 892명, 직속기관에 840명, 사업소에 369명, 출장소에 230명으로 그 총수를 정하고

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하되 통합시 준비요원 1명과 정책보좌관 3명,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 25명, 충청북도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 20명에 대하여는 각각 그기간을 부칙으로 명시하여 한시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한 내용으로서

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승인하여 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칙 부

·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